

의안번호	2126677
의 퇴 인	이자스민 의원
회 답 일	2024.05.24.
추 계 번호	24B027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관련 기숙사 지원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92~152억원, 2029년 92~152억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460~760억원(연평균 92~152억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억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연평균
시나리오1	152	152	152	152	152	760	152
시나리오2	92	92	92	92	92	460	92

주: 1.국비 및 지방비의 합계액임

2.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주의 기숙사 설치 의지 등 행태 변화 등에 따라 본 추계에서의 추가재정소요를 상회 또는 하회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7조의2 (사업 또는 사업 장 지도·점검 등) 제1항 신설	고용노동부장관은 외국인근로자의 적절한 고용관리 등을 하기 위해 매년 1회 이상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선정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 산업안전보건조치 등의 이행실태, 제22조의2에 따른 기숙사 적정성 등 운영현황, 그 밖에 관계 법령의 준수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지도·점검을 하여야 함	의무규정
2	안 제21조(외국 인근로자 관련 사업) 제6호 신 설	6.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지원 사업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3	안 제22조의2 (기숙사의 제공 등) 제3항 신설	사용자는 제8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제12조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을 신청할 때 기숙사의 제공 여부 및 제2항에 따른 기숙사 정보를 직업안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직업안전기관의 장은 제출된 기숙사 정보의 사실 여부 및 「근로기준법」 제100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기숙사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의무규정
4	안 제22조의3 (명단공표) 제1항 신설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가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기숙사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제17조의2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3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명단을 공표할 수 있음.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폐업으로 명단공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재량규정
5	안 제32조(과태료) 7의2 신설	제1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같은 항에 따른 현장 출입·조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17조의2 (사업 또는 사업장 지도·점검 등) 제1항 신설	—	• 미대상 - 고용노동부 행정력의 범위 내에서 이행 가능하므로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음
2	안 제21조(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 제6호 신설	○	• 유사사례 참고 -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산출
3	안 제22조의2 (기숙사의 제공 등) 제3항 신설	—	• 미대상 - 사용자의 의무사항에 대한 규정이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음
4	안 제22조의3 (명단공표) 제1항 신설	—	• 미대상 - 고용노동부 행정력의 범위 내에서 이행 가능하므로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음

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5	안 제32조(과태료) 7의2 신설	—	• 미대상 – 개정안의 시행으로 과태료 수입이 증가할 수 있으나, 재정수입의 순증가액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¹⁾에 따른 비용추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정안은 비용추계서 첨부 대상 법안이 아님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본 추계서는 농림축산식품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자료로서, 실제 외국인근로자 기숙사의 규모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음
 - 본 추계서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외국인근로자 기숙사를 설치하도록 지원할 경우(시나리오1)와 사업주로 하여금 외국인근로자 기숙사를 설치하도록 지원할 경우(시나리오2)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재정소요를 산출

가. 시나리오1

-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외국인근로자 기숙사를 설치하도록 지원할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재정소요를 산출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외국인기숙사 개소당 지원단가에 광역지방자치단체 수를 적용하여 산출

1. “비용추계서”라 함은 발의·제안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 **(지원대상)** 특·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도를 제외한 8개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1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가정
 -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 **(지원단가)**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필요한 지원단가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 사업”의 지원단가(19억원)를 준용
[농림축산식품부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 사업” 개요²⁾]
 - 사업명: 농촌고용인력지원 사업³⁾의 내역사업
 - 사업기간: 2022년 신규 시범사업
 - 지원단가: 1개소 당 평균 19억원(거점형⁴⁾ 24억원, 마을형⁵⁾ 15억원)
 - 지방비 비중: 국비 50%, 지방비 50%

[표 4] 기숙사의 제공 사업(시나리오 1)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억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연평균
지원대상(A, 개)	8	8	8	8	8	—	—
지원단가(B, 억원)	19	19	19	19	19	—	—
국비	9.5	9.5	9.5	9.5	9.5	—	—
지방비	9.5	9.5	9.5	9.5	9.5	—	—
추가재정소요(C=A×B)	152	152	152	152	152	760	152

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분담률에 따라 각각의 지출규모가 달라질 수 있으며, 공사 규모에 따라 본 추계에서의 추가재정소요를 상회 또는 하회할 수 있음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지방비 비율)** 농림축산식품부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 사업”의 국비 대 지방비 비율(5:5)을 준용

나. 시나리오2

- 사업주로 하여금 외국인근로자 기숙사를 설치하도록 지원할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재정소요를 산출
 - 유사사례를 바탕으로 작성한 자료로서 실제 사업장의 기숙사 설치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 2022회계연도 농림축산식품부 결산 설명 자료

3) 사업코드: 1140-333

4) 전남 해남군, 경북 영양군

5) 충남 청양, 부여, 전북 진안, 고창, 전남 담양, 영암, 무안, 경남 거창 8개소

- 개정안은 사업주의 기숙사 등에 대한 인식 및 경영 여건 등에 의해 설치 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나, 본 추계서에서는 이러한 요인에 의한 변화는 고려하지 않음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개소당 지원단가에 외국인고용허가제 사업체 수를 적용하여 산출

- (지원대상) 현재 외국인근로자의 경우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를 통해 특정 비자를 발급받은 경우에 한하여 근로 및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동 개정안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2022년 기준⁶⁾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⁷⁾’ 업체 수(51,051개소) 및 이에 해당하는 농축산업 사업장 수(8,325개소)를 토대로 산출함
- (지원단가) 지원단가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업분야 외국인여성근로자 주거지원 사업”의 지원단가(1개소당 1,500만원)를 준용

[농림축산식품부 “농업분야 외국인여성근로자 주거지원 사업⁸⁾” 개요⁹⁾]

- 사업대상: 고용허가제(E-9)를 통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농가
- 지원내용: 빈집·이동식 조립주택 개보수 및 설치비용 지원
- 지원단가: 1개소 당 1,500만원 지원
- 지방비 비중: 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물량: 총 500개소

- (사업규모) 전체 사업장의 6.0%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
 - 2022년 말 기준 농축산업분야 고용허가제(E-9) 사업장 수(8,325¹⁰⁾) 대비 농림축산식품부 사업 물량(500개소¹¹⁾)의 비중(6.0%)을 토대로 산출
 - 따라서 본 추계서는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전체 사업장의 6.0%를 지원한다는 가정을 토대로 산출
- ※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의 추진경과(실집행률 9.0%) 및 재정소요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 동안 순차적으로 진행된다는 가정을 토대로 추계기간(2025~2029년) 동안 매년 1.2%를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

6) 12월 말 기준 E-9 근로자가 근무 중인 사업장 수

7)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도는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인력송출국가(16개국)에서 일정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8) 사업코드: 4135-398

9)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 4.19일부터 신청·접수”, 2021.04.19

10) 자료: 고용노동부

11)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지방비 비율)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분야 외국인여성근로자 주거지원 사업”의 국비 대 지방비 비율(5:5)을 준용

[표 5] 기숙사의 제공 사업(시나리오 2)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억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연평균
지원대상(A, 개)	51,051	51,051	51,051	51,051	51,051	—	—
지원단가(B, 만원)	1,500	1,500	1,500	1,500	1,500	—	—
국비	750	750	750	750	750	—	—
지방비	750	750	750	750	750	—	—
재정지원비율(C)	1.2%	1.2%	1.2%	1.2%	1.2%	—	—
추가재정소요(D=A×B×C)	92	92	92	92	92	460	92

주: 사업주의 기숙사 설치 의지 등 행태 변화에 따라 본 추계에서의 추가재정소요를 상회 또는 하회할 수 있음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개정안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관련 기숙사 지원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92~152억원, 2029년 92~152억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460~760억원(연평균 92~152억원)으로 추계됨

[표 6]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억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연평균
시나리오1	152	152	152	152	152	760	152
시나리오2	92	92	92	92	92	460	92

주: 1.국비 및 지방비의 합계액임

2.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주의 기숙사 설치 의지 등 행태 변화 등에 따라 본 추계에서의 추가재정소요를 상회 또는 하회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결과는 재량규정인 재정수반요인에 대한 일정 예산의 편성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 본 추계결과는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남 희	이유미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 희	02-6788-3737	nhee@nabo.go.kr